



리포트

•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규약①

# 농약의 효과적 사용 보장 잠재적 건강 · 환경위해성 최소화 도모

농약사용 유익성 성취 위해 사회 많은 분야 공유 책임을 기술  
수 · 출입 국가 행정기관간 협조필요성 제공, 규정 시행 · 준수해야

- 기술부 -

농약의 유통과 사용에 종사 또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공 및 사적기관, 특히 농약을 규제할 적절한 또는 국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당국, 농약 제조자, 무역업자, 관련 일반인들이 그들의 제안된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용인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국가 법률의 조문 내에서의 활용은 물론 필요하고 허용할 수 있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을 인간 건강과 환경에 중요한 부작용 없이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공유할 책임을 기술하며 농약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면서 농약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또는 환경 위해성을 최소화 할 실천행동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 입 국가 행정기관간의 협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이 개정됐다. 이번호부터는 지난해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식량농업기구 평위원회 123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전문을 연재함으로써 정부와 농약산업계, 사용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s)와 기타 관련기관이 각종 교육활동시 적용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 제1조 목적

1.1 이 규약의 목적은 농약의 유통과 사용에 종사 또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공 및 사적기관, 특히 농약을 규제할 적절한 또는 국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다.

- 1.2 이 규약은 정부당국, 농약제조사, 무역업자, 관련 일반인들이 그들의 제안된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용인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국가 법률의 조문 내에서의 활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 1.3 이 규약은 필요하고 허용할 수 있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유익성을 인간 건강과 환경에 중요한 부작용 없이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공유할 책임을 기술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한 행정 부처 또는 여러 행정부처에 대한 이 규약의 모든 관련 자료는 그들 관할 구역내 해당 사항을 해당 행정부처의 지역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 1.4 이 규약은 농약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면서 농약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또는 환경 위해성을 최소화 할 실천행동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 국가 행정기관간의 협조 필요성을 알린다.
- 1.5 이 규약에서의 관계기관에는 국제기구, 수출·입국의 행정기관, 농약업계, 살포장비 업계, 무역업자, 식품산업계, 농약사용자와 환경그룹, 소비자 그룹, 노동조합 등의 공공단체가 포함된다.
- 1.6 이 규약은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의 현장교육이 이 규정을 시행하고 준수하는데 필수요건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정부, 농약산업계, 사용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s)와 기타 관련 기관은 이 규약의 각 조항에 관련한 교육 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1.7 이 규약에서 정한 행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 1.7.1 책임성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무역행위를 장려한다.
- 1.7.2 농약제품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필요한 농약 제품의 품질과 적합성에 대한 규제관리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을 지원하고 농약 사용과 관련된 잠재위험성을 설명한다.

- 1.7.3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취급 결과로 인한 중독사고 방지를 포함한 농약 취급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행동을 촉진한다.
- 1.7.4 농약이 농업생산성과 인간, 동물, 식물 건강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 1.7.5 농약 등록후 활동사항을 포함한 개발, 규제, 생산, 관리, 포장, 라벨링, 판매, 취급, 살포, 사용, 관리 및 폐용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농약처리와 관련된 모든 주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품의 생활사(life-cycle)" 개념을 채택한다.
- 1.7.6 병해충종합관리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공중위생 해충에 대한 종합 병원매개체 관리를 포함).
- 1.7.7 Annex 1에 명시된 정보교환과 국제협정 특히 국제무역에서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에 대한 로테르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포함한다(1).

## 제2조 용어 및 정의

이 규약의 목적을 위하여: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 유효성분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을 지닌 농약의 부분을 의미한다.

**광고(Advertising)** 광고는 인쇄 또는 전자매체, 기호, 전시, 증정물과 구두언어 또는 설명에 의한 농약의 판매 및 사용 촉진을 의미한다.

**사용장비(Application equipment)** 사용장비란 농약사용에 이용되는 기술적인 보조기구, 설비, 기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용기술(Application technology)** 사용기술은 주요 대상 생물 및 농약과 접촉하는 부위에 농약의 실질적인 물리적 방출과 살포과정을 의미한다.

**금지농약(Banned pesticide)** 금지농약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최종 규제조치로 모든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최초사용으로 승인이 거절되었거나 산업계가 국내시장 또는 국내 승인과정에서 재검토 등으로 자진취하하고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조치가 취해진 명백한 증거가 있는 농약을 포함한다.

**처리(Disposal)** 처리는 농약 폐기물, 폐용기, 오염된 물질 등을 재생하거나 중화, 파쇄 또는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Distribution)** 유통은 농약이 판매경로를 통해 지역 또는 국제시장에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환경(Environment)** 환경은 물, 공기, 토양과 이들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들과 모든 생물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조건의 범주를 의미한다.

**동질성(Equivalence)** 동질성은 다른 제조자로부터 생산된 유사하게 보이는 원제의 물리, 화학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불순물 및 독성학적 측면의 유사성 결정을 의미한다.

**현장지도업무기관(Extension Service)** 현장지도업무기관은 농산물의 생산, 취급, 저장 그리고 유통을 포함한 농업 관행의 개선과 관련된 정보, 기술, 권고사항의 전달 책임이 있는 지방기구를 말한다.

**제제(Formulation)** 제제는 사용목적에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체로 사용자가 구매하는 농약의 형태를 의미한다.

**최적표준영농법(Good Agricultural Practice)** 최적표준영농법은 농약사용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믿을만한 병해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추천 또는 국가에서 인정된 농약의 사용을 포함한다. 인가된 최고사용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처리수준을 포함하며 잔류가 가장 적게 남는 방법이 적용된다.

**유해성(Hazard)** 유해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물질, 인자 또는 고유성질 즉 인간건강, 환경에 부작용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들)을 의미한다.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병해충종합관리는 농약과 기타 억제제 사용을 경제적으로 보장받고 인간건강과 환경에의 위해성을 감소 또는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해충군의 확대를 저하시키는 모든 가능한 병해충 관리 기술과 적절한 연속적인 종합조치의 주의 깊은 고려를 의미한다. 병해충종합관리는 농업생태계의 최소한 훼손으로 건강한 작물의 성장을 중요시하며 자연적인 병해충 관리 구조를 촉진한다.

**라벨(Label)** 라벨은 농약 또는 용기(중간용기, 외용기), 농약 소매용 포장용지에 부착, 인쇄 또는 그림문자화 한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자(Manufacturer)** 제조업자는 농약의 유효성분을 만들거나 그 제제나 제품을 조제하는 기업이나 그 사업 또는 기능(직접 또는 계약상, 계약에 의한 중개인과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 또는 사적 법인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마케팅(Marketing)** 마케팅은 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의 유통·판매를 비롯해 광고를 포함한 제품 판매촉진, 제품 선전활동, 정보교환 등의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 잔류허용기준은 식품, 농산물, 동물사료중 법적으로 수용가능하게 허용 또는 인정된 잔류의 최대농도를 의미한다.

포장(Packaging) 포장은 농약제품이 도·소매점을 거쳐 사용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사용되는 보호 포장재료를 포함한 용기를 의미한다.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비는 농약의 취급, 사용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의복, 재료, 장치를 의미한다.

농약(Pesticide) 농약은 식품, 농업생산물, 목재, 목제품, 사료의 생산, 가공, 수송, 저장, 판매 및 관련 과정에서 인간이나 동물 질병의 매개생물을 포함한 병해충 및 해로운 잡초와 해를 가하는 유해 동식물의 중용 예방, 박멸 또는 제어하기 위한 물질이나 그 물질의 혼합물 또는 곤충, 거미류와 동물체내의 기타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투여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농약에는 과실을 숙아내거나 또는 과실의 조기 낙과를 방지하기 위한 식물생장조절제, 낙엽제, 건조제 같은 약제와 작물 수확전후 저장, 수송시 상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농약산업계(Pesticide Industry) 농약산업계는 농약 및 농약제품의 제조, 제제화, 마케팅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을 의미한다.

농약법령(Pesticide Legislation) 농약법령은 농약의 질적, 양적,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면에서 그 제조, 마케팅, 유통, 라벨링, 포장, 사용 및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독물(Poison) 독물은 인간, 식물 또는 동물이 비교적 소량을 흡수하였을 때 조직이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중독(Poisoning) 중독은 독물로 인한 상해나

장애의 발현을 뜻하며 해독 작용을 포함한다.

제품 또는 농약제품(Product or Pesticide Product) 제품 또는 농약제품은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형태로 농약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을 말한다.

제품책임관리(Product Stewardship) 제품책임관리는 농약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최종단계 사용과 사용 후를 포함하는 책임성 있는 윤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공공집단(Public sector groups) 공공집단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학 단체, 농업인 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환경·소비자·보건단체 등을 말한다.

등록(Registration) 등록은 농약 제품이 사용 목적에 효과가 있으며 인간과 동물 건강 및 환경에 해가 없다는 포괄적인 과학적 자료에 따라서 책임 있는 당국이 판매와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포장(Repackaging) 재포장은 다음의 판매를 위해 상업적 포장에서 보통 더 작은 다른 용기로 인가받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잔류물(Residue) 잔류물은 농약사용의 결과로 식품, 농산물, 사료에 남아있는 특정물질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독성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고려되는 전환물질, 대사물질, 반응물질, 불순물 같은 농약유도체를 포함하며 "농약잔류물"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잘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미지 또는 불가피한 요인(예 환경)에 의한 것이 포함된다.

책임당국(Responsible authority) 책임당국은 농약의 제조, 유통, 사용을 규제하는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들)을 말하며 좀 더 일반적으로는 농약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말한다.

위해성(Risk) 위해성은 농약에 노출된 후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및 환경에의 부작용 또는 그 영향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농약정보**